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방법 및 기준 구체화 등 >
▣ 이재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947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Ⅰ. 제안경위 ·····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Ⅲ. 검토의견 ····· 2

1.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방법 및 기준 구체화 등 ····· 2

Ⅰ. 제안경위

2025년 4월 18일 이재관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4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퇴직연금감독규정」 등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 등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적립금은 비상장주식에의 투자를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은 벤처펀드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주요 연기금 및 공제회 등이 출자한 벤처펀드는 9.2%~17.2%의 높은 수익률을 실현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적립금도 벤처기업 등 비상장주식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여 운용수익률 제고 및 벤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및 제30조의2).

Ⅲ. 검토의견

1.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방법 및 기준 구체화 등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제시하는 경우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 등에 따르도록 규정한 법 제30조제2항제5호를 삭제하고, 적립금 운용의 운영방법과 관련하여 안 제30조의2를 신설함.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하던 적립금의 운용 관련 사항을 법으로 상향입법하려는 내용으로, 현행법령에서 제외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 중 비상장주식을 퇴직연금 운용 방법에 추가**하고 있음(안 제30조의2제1호다목).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운용관리업무의 수행) ① (생 략) ②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제시하는 경우에 다	제30조(운용관리업무의 수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 등에 따를 것 <신 설>	----------.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제30조의2(적립금의 운용)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 및 기준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1. 운용방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용방법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 취급하는 예금·적금 나.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계약 중 적립금이 반환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보험계약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지분증권 중 비상장주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은 사용자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라.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신관서가 취급하는 예금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중 신용등급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증권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330조제1항에 따라 취급하는 예탁금 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에 따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 사. 그 밖에 적립금의 안정적인 중장기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운용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운용방법

	2. 기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를 것 가. 제1호 각 목에 따른 운용방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과 증권에 대한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운용방법을 제외한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총투자한도 내에서 운용할 것.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총투자한도 내에서 퇴직연금제도별로 세부적인 투자한도를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투자위험이 큰 것으로 정한 자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른 집합투자의 방법으로만 투자할 것

나. 현행법령상 퇴직연금사업자의 적립금 운용방법 및 기준

현행법 제30조제2항제5호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적립금 운용방법과 관련하여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법 시행령 제26조는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운용방법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먼저 운용방법으로, 현행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는 예금·적금, 보험계약, 증권(지분증권 중 비상장주식 제외), 예탁금, 사회기반시설채권 등으로 적립금 운용방법을 구분하여 세부 내용을 표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적립금 운용방법]

구분	주요 내용
예금·적금	-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 취급하는 예금・적금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신관서가 취급하는 예금
보험계약	-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계약 중 적립금이 반환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보험계약
증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증권 ※「퇴직연금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라 지분증권 중 **비상장주식 제외** ※ 이 경우 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은 사용자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것이 아니어야 함

예탁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중 신용등급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증권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330조제1항에 따라 취급하는 예탁금
사회기반 시설채권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에 따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
기타	- 그 밖에 적립금의 안정적인 중장기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운용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운용방법

또한 현행법 시행령은 적립금 운용기준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각 운용방법 중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시행령 제25조제1항 각호[1])에 따른 원리금보장 운용방법과 증권에 대한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운용방법을 제외한 운용방법에 대해

1) 법 시행령 제25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①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을 말한다.
1. 신용등급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운용방법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 취급하는 예금·적금
나.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계약으로서 적립금의 최저 이자율을 보증하는 등의 형태로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계약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3호나목에 따른 환매조건부매수 계약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330조제1항에 따라 취급하는 예탁금
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신관서가 취급하는 예금
3. 「한국은행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국채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채권
3의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에 따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
4. 그 밖에 원리금 상환이 보장되는 운용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운용방법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의 기준 및 제4호의 운용방법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총투자한도 내에서 운용하도록 하며,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총투자한도 내에서 퇴직연금제도별로 세부적인 투자한도를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또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투자위험이 큰 것으로 정한 자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른 집합투자의 방법으로만 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용방법 및 기준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구체적인 사항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2)]

다. 검토의견

현행법령은 적립금 운용방법 중 '증권'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증권으로 규정하고,[3)] 「퇴직연금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은 지분증권 중 비상장주식을 제외하여 적립금을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령에 대하여 축적된 퇴직연금 적립금을 벤처캐피탈에

2) 이하 구체적인 시행령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은 [참고] 적립금 운용방법 및 기준 관련 법령 참조

3) 이 경우 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은 사용자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것이 아니어야 함

유입시켜 수익 다변화와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에 기초하여 비상장주식에 대한 퇴직연금 투자 필요성을 제기하는 시각이 있음.[4)5)]

이에 개정안은 ① 현행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적립금 운용방법 및 기준을 법으로 규정하고, ② 적립금 운용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증권을 명문화하여, 퇴직연금 적립금이 벤처기업 등 비상장주식으로도 유입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구체적으로 보면,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기준을 법 규정으로 상향하여 규정한 것으로, 대부분 적립금 운용방법 및 기준이 시행령과 동일하나, ①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증권을 적립금 운용방식으로 규정하고, ② 금융위원회 고시 이전 고용노동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던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이 차이가 있음.

[현행시행령과 개정안의 비교]

구분	현행 시행령	개정안
예금·적금	-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 취급하는 예금・적금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신관서가 취급하는 예금	좌동

4) [VC, 퇴직연금 러브콜③] "192조 DB형 1%만"…감독규정 수술 필요, 양용비 기자, 2024.04.11.,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05303

5) 퇴직연금의 벤처 투자 허용 검토해야, 정유신, 2025.4.14.,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8262

보험계약	-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계약 중 적립금이 반환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보험계약	좌동
증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증권 ※「퇴직연금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라 지분증권 중 **비상장주식 제외** ※ 이 경우 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은 사용자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것이 아니어야 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 중 비상장주식을 포함**) ※ 이 경우 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은 사용자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것이 아니어야 함
예탁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중 신용등급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증권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330조제1항에 따라 취급하는 예탁금	좌동
사회기반시설채권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에 따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	좌동
기타	- 그 밖에 적립금의 안정적인 중장기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운용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운용방법	좌동
적립금 운용 기준	- 각 운용방법 중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원리금보장 운용방법과 증권에 대한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운용방법을 제외한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좌동

	정하는 총투자한도 내에서 운용할 것 ※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총투자한도 내에서 퇴직연금제도별로 세부적인 투자한도를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투자위험이 큰 것으로 정한 자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른 집합투자의 방법으로만 투자할 것	
사전 협의 규정	- 금융위원회 고시 이전 고용노동부장관과의 사전협의 필수 규정	(삭제)

이러한 개정안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퇴직연금 적립금이 보다 다양한 분야에 운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만약 비상장주식에 대한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임.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의 수익률은 가입자의 안전자산 선호 성향, 퇴직금의 후불임금적 성격에 기초한 보수적 운용 관행 등에 따라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음.[6)]

[2019~2023년 퇴직연금 수익률]

6) 참고로 2024년 국민연금 수익률은 15.0%이고, 국민연금의 1988년~2024년 12월 누적 수익률은 6.82%임.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수익률(%)	2.25	2.58	2.00	0.02	5.26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현행법령은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기준을 정하며 금융위원회가 구체적인 사항을 고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러한 사전협의 규정은 법문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만약 개정안과 같이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방법 및 기준이 법으로 규정될 경우, 퇴직연금 관련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의 사전협의 규정도 명시적으로 법에 규정하여 퇴직연금의 사회보장성에 대한 정책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은 비상장주식을 퇴직연금 운용방법에 추가하고 있는데, 이를 통한 수익률 제고가 기대되는 측면은 있으나 퇴직연금의 후불임금으로서의 성격·사회보장적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에 기초하는바,[7] 가입자(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투자 결정을 하는 구조로, 비상장주식에 대한 투자 허용으로 인한 손실 위험이 가입자의 노후 자산으로 직

7)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제외한 DC, DB, IRP 모두 계약형 퇴직연금임.

결될 우려가 있음.

퇴직급여는 후불 임금으로서의 성격 이외에도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과 공로보상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므로,[8][9]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와 노후소득 보장의 관점에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금 투자 확대가 적절한지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10]

개정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구체적인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방법을 법률에 열거할 경우 금융시장 상황 변화 등에 따라 투자 가능 상품을 탄력적으로 개정하기 어렵고, 비상장주식을 퇴직연금 운용방법에 추가하는 것은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저해할 뿐 아니라 비상장 주식의 낮은 유동성과 높은 손실 위험은 가입자의 수급권 및 노후 소득에 직결되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8) 대법원 2014.7.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닌다"

9) 2013므2250 판례는 퇴직급여법 제정 이후의 판례로, 퇴직급여법 제정 이전 판례 역시 퇴직금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미지급임금이 축적된 것이 그 재원이 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1975.7.22. 선고 74다1840판결)",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은 근기법상 고용주와 피용자의 고나계에 있어서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적인 성질을 지닌 것이라 할 것이니 피해자인 피용자의 일실이익에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1969.12.30. 선고 69다1977판결)" 등 퇴직금도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주해Ⅱ」, 노동법실무연구회, 2020, 705쪽 참고

10) 참고로, 현재 국민연금·사학연금 및 공무원연금의 경우 기금형 연금으로 전문적인 운용주체(공단)가 전체 기금 단위로 자산을 통합적으로 운용·관리하여 벤처펀드 등에 투자할 경우에도 기금 내에서 리스크를 흡수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 퇴직연금제도와 차이가 있음.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 퇴직연금은 개별 가입자 계좌 단위로 적립금이 운용되는 구조인바 비상장주식과 같은 위험자산 편입시 해당계좌 수익자에게 직접적으로 손실이 귀속될 수 있는 우려가 있음.

또한 고용노동부는 금융위원회가 법령에 따라 일부 운용방법을 고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현행 시행령 규정은 금융투자 측면만이 아니라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노동정책적 관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반영한 제도적 장치이므로 해당 사전협의 절차를 삭제하는 개정안은 퇴직연금 제도의 정책적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한편, 금융위원회는 비상장주식의 높은 위험도를 감안하여 투자 허용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국민·사학·공무원연금의 수익률이 퇴직연금보다 높은 이유는 투자 전문성이 높은 전문가가 연금 납입자들의 자금을 운용하는데 기인하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법률에 열거할 경우 신상품 출시, 상황 변경 등에 따라 적시에 투자 가능 상품을 개정하기에 곤란한 점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40

참고	적립금 운용방법 및 기준 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0조(운용관리업무의 수행)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제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취득과 이해가 쉬울 것
2. 운용방법 간의 변경이 쉬울 것
3. 적립금 운용결과의 평가 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
4.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 하나 이상 포함될 것
5.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 등에 따를 것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5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①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을 말한다.

1. 신용등급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운용방법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 취급하는 예금·적금

나.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계약으로서 적립금의 최저 이자율을 보증하는 등의 형태로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계약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3호나목에 따른 환매조건부매수 계약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330조제1항에 따라 취급하는 예탁금

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신관서가 취급하는 예금
3. 「한국은행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국채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채권

3의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에 따른 산업기반신용보증

기금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

4. 그 밖에 원리금 상환이 보장되는 운용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운용방법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의 기준 및 제4호의 운용방법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6조(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운용방법 및 기준) ① 법 제3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 및 기준을 말한다.

1. 운용방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용방법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 취급하는 예금·적금

나.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계약 중 적립금이 반환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보험계약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증권. 이 경우 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은 사용자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라.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신관서가 취급하는 예금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중 신용등급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증권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330조제1항에 따라 취급하는 예탁금

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에 따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

사. 그 밖에 적립금의 안정적인 중장기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운용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운용방법

2. 기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를 것

가. 제1호 각 목에 따른 운용방법 중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원리금보장 운용방법과 증권에 대한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운용방법을 제외한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총투자한도 내에서 운용할 것.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총투자한도 내에서 퇴직연금제도별로 세부적인 투자한도를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투자위험이 큰 것으로 정한 자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제6조제5항에 따른 집합투자의 방법으로만 투자할 것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나목·다목·사목, 제2호가목의 사항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퇴직연금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8조(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취급 금융기관)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의 "신용등급 등에 관하여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기준 BBB- 이상, 국제 신용평가기관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일 것. 다만, 둘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 그 중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하며,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을 경우에는 무보증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재무건전성의 요건을 갖출 것

가. 법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자본시장법」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자본시장법」제331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별도의 경영지도기준에 따른 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할 것

제8조의2(기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운용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용방법을 말한다.

1. 제8조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발행어음 및 표지어음

2. 제8조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본시장법」 제4조제7항제1호의 사채. 이 경우 해당 사채를 발행하여 수취한 자금의 운용은 파생결합증권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사채와 각각 계정분리 등의 형태로 독립성을 갖추어야 한다.

가. 상환금액이 원금 이외의 수익을 보장할 것

나. 중도해지시에도 원금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것

다. 「자본시장법」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이나 제9항에 따른 "매출"의 방법(이하 "공모"라 한다)으로 발행되고 복수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

격 신용평가등급을 받을 것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이 제공하는「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금·적금.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 가입자의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금·적금에 대한 금융기관별 투자한도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7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기준 BBB- 이상, 국제 신용평가기관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일 것. 다만, 둘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 그 중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하며,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을 경우에는 무보증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갈음할 수 있다.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비율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일 것

제8조의3(운용방법으로서의 보험계약) 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보험계약"이란 납입보험료의 전액이 적립금의 반환에 충당하기 위해 적립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다만, 퇴직연금 제도의 운영, 자산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한 비용은 적립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2항 단서에 따른 보험계약의 경우 위험보험료 및 보증수수료를 적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 적립금의 반환금액이 변동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약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계약(이하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1.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여 개인형퇴직연금에서 운용될 것

2. 납입보험료 전액(연금 개시 시점까지의 자산운용 이익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을 퇴직급여로 보증할 것

3. 제2호에 따른 보증을 위해 보증수수료를 수취할 경우,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으로부터 보증수수료 산출방식 등의 적정성을 판매 전에 확인받고, 보험업 감독규정 제6-11조의5에 따라 보증준비금을 적립할 것

4.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보험계약부채로 구분될 것 ③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의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제8항제1호가목의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설명의무를 준용하여 가입자에게 중요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9조(증권 및 기타 적립금 운용방법의 종류 등) 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다목의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증권"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채무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증권은 제외한다.

가. 특수채 및 사채권으로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신용평가등급을 받지 않은 것(복수의 등급이 있는 경우 낮은 등급을 기준으로 하며, 보증채권의 경우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나. 외국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기업 등이 발행한 것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국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신용평가등급을 받지 않은 것. 다만, 국채의 경우 국가신용평가등급으로 동 채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갈음한다.

다. 기업어음증권으로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A3- 이상) 미만일 것

라. 다른 법령에 의해 자본시장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채무증권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신용평가등급을 받지 않은 것

마. 제8조의2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갖춘 「자본시장법」제4조제7항제1호의 사채로서 사모로 발행된 것

2. 「자본시장법」 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증권은 제외한다.

가. 비상장주식

나. 「자본시장법시행령」 제6조제1항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다. 「자본시장법」 제6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식

라. 외국법인발행 주식으로서 국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시장의 안정성·유동성·투명성을 감안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적격 해외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것

마.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금융투자업규정 제4-54조의 규정에 의해 산정된 위험평가액(이하 "위험평가액"이라 한다.) 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것. 다만, 「자본시장법」제234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화에 1배를 초과하거나 음의 배율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초자산 중 증권의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하기 위하여 동법 제5조제3항에서 정하는 장외파생상품(이하, "장외파생상품"이라 한다)을 중요한 운용수단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

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3. 「자본시장법」 제4조제2항제3호의 수익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증권은 제외한다.
가.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것,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화에 1배를 초과하거나 음의 배율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초자산 중 증권의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하기 위하여 장외파생상품을 중요한 운용수단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나. 「자본시장법」 제110조의 수익증권으로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신용평가등급을 받지 않은 것
다. 다른 법령에 의해 자본시장법 제4조제2항제3호의 수익증권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신용평가등급을 받지 않은 것
4. 「자본시장법」 제4조제2항제5호의 파생결합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증권은 제외한다.
가. 사모로 발행된 것
나. 상환금액의 최대 손실이 원금의 100분의40을 초과하는 것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증권에 상당하는 「자본시장법」 제4조제2항제6호의 증권예탁증권
②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제8조제1호 및 제2호나목을 말한다.
③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운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투자업규정」 제5-1조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환매조건부 매수계약
2. 「자본시장법」 제3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계약. 다만, 기초자산에 대한 위험회피목적으로 체결된 것에 한한다.
3. 제8조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발행어음 및 표지어음
4. 제8조의2제3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금·적금.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 가입자의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금·적금에 대한 금융기관별 투자한도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7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운용지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으로 선정한 증권이 신용평가등급의 하락 등

으로 제1항의 증권에 해당되지 않게 될 경우 차기 운용방법 변경시기까지는 적립금 운용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운용관리기관은 그 운용지시자에게 해당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이해상충방지 등) 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다목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은 사용자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회사 또는 종속회사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운용지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으로 선정한 증권이 발행자의 지분변동 등에 의해 제1항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게 될 경우 차기 운용방법 변경시기까지는 동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③ 사용자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 또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서 규정한 지분법 적용관계에 있는 자(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용자의 계열회사등"이라 한다)가 발행한 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하고, 환매조건부 매수계약은 합산한다)에 대한 투자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경우 : 100분의 0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경우 : 100분의 20 이내
3. 개인형퇴직연금의 경우 : 100분의 30 이내

④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을 편입할 수 없다.

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경우 제3항의 투자한도 계산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으로 구분하여 각각 한도를 적용하고, 채무증권에 환매조건부매수계약을 합산한다.

제11조(적립금 운용방법 등) ① 영 제2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운용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을 말한다. 다만, 제 9호 및 제 10호의 운용방법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1. 환위험 헤지거래를 체결하고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인 외국의 국채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5호의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인 증권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7호의 학자금대출증권으로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인 증권

4. 영 제25조제1항 각호에 따른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및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증권에만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등(제9조제1항제3호의 수익증권 또는 시행령 제26조제1항나목의 보험계약중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계약. 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5. 약관 또는 정관상 주식의 투자한도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증권형집합투자증권등(투자적격등급 이외의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한도가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6. 「자본시장법」 제229조제5호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7.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매조건부매수 계약(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매매대상증권이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증권일 것
나. 매매거래일부터 1영업일 이내에 환매도할 것
8. 보증형 실적배당보험
9. 투자목표시점이 명시되어 있고 이와 연동하여 자산배분 등이 조정되도록 투자설명서 상 운용계획으로 명시되어 있는 집합투자기구로서 감독원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집합투자증권
10.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②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형퇴직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에는 투자할 수 없다.
1. 제9조제1항제2호의 지분증권(단, 집합투자증권인 지분증권은 제외한다)
2.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 및 후순위채권
3. 「자본시장법」 제9조제19항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4. 「자본시장법」 제229조제2호의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단,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40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방법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증권에는 투자할 수 있다.
가.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사용자(이하 이 목에서 "퇴직연금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발행하거나 퇴직연금사업자등과 동일 계열기업군에 속한 자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나. 퇴직연금사업자등 또는 퇴직연금사업자등과 동일 계열기업군에 속한 자가 투자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다. 퇴직연금사업자등 또는 퇴직연금사업자등과 동일 계열기업군에 속한 자

가 투자한 부동산에 투자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해당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경우 가입자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집합투자증권

5. 제9조제1항제5호의 증권예탁증권

③ 자산관리계약을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 하는 경우 동 자산관리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운용방법(대상증권이 제10조제3항의 사용자의 계열회사등이 발행한 증권이 아니면서, 제1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분산요건을 갖춘 환매조건부매수계약의 경우에는 제외하고, 원금만을 보장한다는 명목에 불구하고 원금상환조건 성취 가능성, 상품의 손익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상 원금 이외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포함한다)에는 투자할 수 없다.